

### 퇴직금 지급관련

**Q**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목적  
으로 2021.12.31 일자로 퇴사후(퇴직금 지급) 다시 2022. 1월에 재입사 해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21년 12월31일 퇴사후 2022년1월1일에 재입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산매각

**Q** 자산매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산 매각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  
세를 확인 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월에 사고 익월에 바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  
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달간격으로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A**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Q**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  
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오래전에 고객사에 납품한 재고를 고객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당사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납품한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안에 부품을 교체한것인데 세금계산서 및 매  
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최초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 무상교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제품납품후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품교체 거래의 경우로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Q** ㉮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이커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카메이커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인 즉,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었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텐데 이 경우 폐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금형대 회수금-금형대 제작비용의 차는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A** ㉮ 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Q** ㉮ D/B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서,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DB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이미 자산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액 초과 불입액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